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12.01.
개정: 2023.10.16.
개정: 2024.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대원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대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6.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03.01.>

7. “2차 가해행위”란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03.01.>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참고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대원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둔다.
② 인권상담실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센터 운영과 업무를 통할하는 대표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을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 조사, 연구, 교육활동, 그 밖에 센터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장은 전문위원에게 인권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상담실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 조사, 연구, 교육활동 및 그 밖의 센터 업무를 지원한다.

③ 상담 · 조사 및 연구 · 교육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상담실 관리 및 운영
2. 인권 교육 및 홍보
3. 인권침해 등 사건 접수, 상담 및 조사
4.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 및 구제
5. 성희롱 ·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6.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7. 인권위원회 운영지원
8. 인권 연구, 성평등 정책 개발 및 교육
9.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력예방 교육) <삭제 2024.03.01.>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생생활관장 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학생 2명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 위원 및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0.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예산과 결산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인권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상담실의 운영 및 평가
5. 폭력예방 교육,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인권 연구, 성평등 정책 개발 및 교육
7. 그 밖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9조(설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 전문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외에 본교 전임교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운영위원회 겸직 가능)

③ 위원장은 법률 등 분야에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에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결과 및 처리
2. 인권침해 등 사건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 등 피해회복 조치
3. 인권침해 등 사건 가해자의 교육 및 징계 요구 등 재발방지 조치
4. 인권침해 등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센터 연구원 또는 당해 사건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회의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건을 조사 ·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조사 및 구제조치 등

제15조(신고 및 조사의 대상)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권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센터에 사건 이관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은 민원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 및 기초조사를 하고 당사자 간 합의 · 조정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④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되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련사건이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에 계속된 경우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은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⑥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 · 휴학 · 사직 · 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6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5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5조제2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 · 잠정적으로 요청 · 집행되어야 한다. <신설 2024.03.01.>

제18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을 희망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 관련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 종결 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신설 2024.03.01.>

제22조(화해절차)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합의사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정위원을 위촉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장,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양 당사자가 전항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⑦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24.03.01.>

제24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24.03.01.>

제2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사건관련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및 사건관련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요청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중지, 접근 금지,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인권교

육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 경우
3. 당사자가 제17조 또는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5.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7.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4.03.01.>

③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전항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03.01.>

제28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9조(피해자의 보호)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및 사건관련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경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34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